

의안번호	2209970
의 퇴 인	구자근 의원
회 답 일	2025. 5. 19.
추 계 번호	25F25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1,197억 원, 2031년 1,504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6,750억원(연평균 1,3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법인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안 제13조 등)	-1,197	-1,275	-1,349	-1,425	-1,504	-6,750	-1,35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과세표준) 등	○ 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인상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 중소기업 등의 공제한도는 현행(100%)과 동일하게 유지 - 공제한도: 80% → 100% ※ 공제한도 폐지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및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산정방식도 같이 변경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3조(과세표준)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
- 일반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재무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른 1법인당 이월결손금의 증가분과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수를 추정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분을 추정한 후, 실효세율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수효과를 추계
 -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중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현행 공제한도(80%)에 도달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발생
 - 1법인당 이월결손금의 증가분은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귀속연도 2022년)를 바탕으로 공제한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 공제한도: 현행 80% → 개정안 100%
 -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기업의 수는 2023년 신고된 기업 수가 유지되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기업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 최근 10년(2015~2024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하 '세전순이익')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개별기업별 미처분 이월결손금을 통해 2024년 기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중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기업 비중을 추정
 - 실효세율(19.6%)은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으로,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세수효과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이월공제금액 증감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이월공제금액 실적이 존재하는 2025년(신고연도)까지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이월공제금액 증감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 (제도개요) 일반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년 도입되어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23년 80%로 다시 확대

○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년 80%로 도입되어 2019년 60%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년 80%로 다시 확대

— 중소기업 및 회생기업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없이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 적용

[표 2]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변화 추이

(단위: %)

	2015년 이전	2016~2017년	2018년	2019~2022년	2023년 이후
공제한도	100	80	70	60	80

○ 개정안은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여 중소기업 등과 같이 이월결손금 전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

— 공제한도: 80% → 100%

□ (이월결손금 공제 실적) 2023년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17.1조원, 1법인당 공제액은 25.5억원 수준

[표 3]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 2019~2023년

신고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월결손금 공제금액(A, 조원)	9.7	8.9	12.7	23.1	17.1
법인수(B, 개)	9,022	7,736	6,651	7,433	6,692
1법인당 공제금액(AB, 억원)	10.7	11.5	19.0	31.1	25.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 증가분 추정)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기업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1법인당 이월결손금의 증가분과 공제한도가 적용

- 되는 법인의 수를 추정하여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분 추정
- 2023년 기준 1법인당 이월결손금 증가분(6.4억원)은 신고 기준 1법인당 이월결손금이 공제한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6.4\text{억원} = 25.5\text{억원} \times (100\% - 80\%) / 80\%$
 -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수(842개)는 2023년 기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수와 2015~2024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공제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2023년 신고 기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수는 6,692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자료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최근 10년(2015~2024년, 귀속연도 기준)*간 재무자료가 모두 가용한 1,926개 기업의 연도별 세전순이익 자료를 추출
 - ※ 2022년 이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0년(현행 15년)
 - t년도에 발생한 결손은 t+1년 이후로 이월되며, t+1년 이후 세전순이익이 흑자전환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여 2015~2024년까지의 연도별·개별기업별 미처분 이월결손금을 산출
 - ※ 단, 발생한 결손금의 연도별 공제한도는 [표 2]와 같음
 - 2024년(귀속연도) 기준 세전순이익과 미처분 이월결손금을 비교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866개)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기업(109개)의 비중은 12.6%로 산출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2024년 흑자기업 중 전년도 미처분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도 세전순이익이 흑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출
 - 향후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수는 2023년 신고기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수(6,692개)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기업 비중(12.6%)을 반영하여 842개로 추정
 - 1법인당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증가분과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인 비중을 반영하여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분을 추정

[표 4]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분 추정: 2023년(신고기준)

	1법인당 이월결손금 증가분(A, 억원)	공제한도 적용기업 수 추정			과세표준 감소분 (A×B×C, 억원)
		이월결손금 발생 기업수(B, 개)	공제한도 적용 비중(C, %)	공제한도 적용 기업수(B×C, 개)	
과세표준 변화분	6.4	6,692	12.6	842	5,378

□ (세수효과 추계) 2023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감소분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1법인당 이월결손금 증감을 및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증가율 전망(2024.10.)을 반영하여 향후 과세표준 감소분을 추정한 후, 실효세율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과세표준 감소분은 2025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법인당 이월결손금 증감율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이월결손금 증감율은 최근 10년간 재무자료가 가용한 1,9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귀속연도와 징수연도의 시차를 감안하여 2024년 및 2025년 세수효과 증감에 반영
 - ※ 상장법인의 이월결손금 증감율(징수연도 기준): ('24년) 8.4%, ('25년) △7.0%
 - 2026년 이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분 추계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과세표준 감소분	5,378	5,831	5,424	5,734	6,118	6,518	6,896	7,285	7,687
증감율	-	8.4	-7.0	5.7	6.7	6.5	5.8	5.6	5.5

주: 2024년 및 2025년의 세수효과 증감율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이월결손금 증감율에 따라,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34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4.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분 추정치에 2023년 신고 기준 일반법인의 실효세율(19.6%)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

	2027	2028	2029	2030	2031
과세표준 감소분(A)	6,118	6,518	6,896	7,285	7,687
세수 감소효과 (B=A×19.6%)	1,197	1,275	1,349	1,425	1,504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1,197억 원, 2031년 1,504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6,750억원(연평균 1,3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법인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안 제13조 등)	-1,197	-1,275	-1,349	-1,425	-1,504	-6,750	-1,35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